

제 502 호

1975. 5.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제

제 953 호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제 954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고등학교 입학자
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
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5

○ 규 칙

제 1472 호 : 서울특별시구청장직무대리규정폐지규칙..... 5

제 1473 호 :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6

○ 훈 령

제 406 호 : 서울특별시종합청사건립협의회규정..... 7

○ 고 시

제 69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및도로)결정 및 변경지적
승인..... 9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70 호 : 공유수면 매립 공사기간연장허가.....	10
제 71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10
제 72 호 : 도시계획사업 (고등학교) 시행허가.....	11

◎ 공 고

제 109 호 : 한지계획변경 공람공고.....	12
제 110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 공고.....	12
제 11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3
제 113 호 : 1975 년의로유사업자신고실시.....	16
제 115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중개정요령.....	17
제 12 호 (도봉보건소공고) : 청사이전공고.....	17

◎ 사 명 17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 검 성
197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53 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목적)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시정각교제의 제작 보급과 교원의 연수 및 현장 지도로서 서울특별시 교육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하부조직) 교육연구원에 사무과, 조사연구부, 교원연수부, 자료제작부, 생활지도상담부, 교육도서부들 둔다.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조사연구부) 조사연구부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회 육성에 관한 사항
3.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4. 연구교사지도에 관한 사항
5. 연구자료의 간함에 관한 사항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부에 조사연구실, 교육영역별 연구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7조 (교원연수부) 교원연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과학실험실습 지도에 관한 사항
3. 과학실험실습기구, 재료의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연수부에 연수실, 과학연수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8조 (자료제작부) 자료제작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청각 교재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시청각 기.교재의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청각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4. 시청각 기재조작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자료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료제작부에 자료제작실, 기재관리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9조(생활지도상담부) 생활지도상담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생활지도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문제 상담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심리 및 학력검사에 관한 사항
4. 학생진로, 취업상담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상담부에 생활지도연구실, 상담연구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연구

사로 보한다.

제10조(교육도서부) 교육도서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도서 및 자료의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연구 자료의 수집과 보급에 관한 사항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도서부에 도서실, 교재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연구사 또는 사서로 보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정원) 교육연구원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사서, 사무직원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생

197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954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

조례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시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정고시로 500원
2. 합격증명서 100원
3. 성적증명서 100원
4. 과목합격증명서 100원

5. 과목중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2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구청장직무대리규정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출 인

1975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472 호

서울특별시구청장직무대리 규정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 1072 호 (1970.

9. 1) 서울특별시구청장 직무대리 규정은 이에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73 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별표 2.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

의 "서울동부경찰서"란중 "신사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고 신동파출소 다음에 "는
현파출소"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서울남부경찰서"란중 "교관파출
소"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고 "관악파출소"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 동부 경찰 서	신 사 파출소	성동구 신 사동 영동 1 지구 1공구 270의 2	신사동 (제영동 1지구 150, 151, 201-204, 208-210, 217, 218, 222, 229-233 영동 2지구 964 구획) 논현동 (제영동 2지구 953, 954, 977-985, 1004- 1007 구획) 학동 (제영동 2지구 54-67, 70-75, 83, 86, 96, 103- 105, 113, 1022, 1023, 1027-1029, 1081, 1082, : 1086-1088 구획) 압구정동 (제영동 2지구 1, 2, 3, 10-13, 32, 33, 42, 43, 47-49 구획) 장원동 영동 1지구 145, 178 구획 반포동영동 1지구 143, 144, 151-155, 160-165, 170 구획

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 동부 경찰서	논현 파출소	관악구 반 포동 영동 1지구 87 구 회 5	논현동영동 2 지구 953, 954, 977-985, 1004-1007 구회 신사동영동 1 지구 150, 151, 201-204, 208-210 217, 218, 222, 229-233, 영동지구 964 구회 학동영동 2 지구 1022, 1023, 1027-1029, 1081, 1082 1086-1088 청담동영동 2 지구 1024, 1025 구회 반포동영동 1 지구 73-94, 156, 278-283, 296-306 구회 삼성동영동 2 지구 512-516, 518, 519, 589, 594-597, 600-618, 621-626, 1025, 1098, 1091 구회 서초동영동 1 지구 64-73, 308, 335-343, 347 구회 역삼동영동 1 지구 47-60 구회, 영동 2 지구 533-538, 540, 545-549, 551-559, 562-571, 590-593, 598, 599 구회
서울 경남 부서	교 관 파출소	관악구 신림 동 289	신림 2 동 94-127, 198, 248-250, 253-408, 산 1 의 1, 5, 7, 8 호 산 2 의 2, 5, 7 호 산 57-산 69, 산 71-산 83, 산 85- 산 89, 산 134, 산 136-산 138, 산 141, 산 143, 산 149-산 157
	관 악 파출소	관악구 신림 동 136-1	신림 2 동 128-188, 190-197, 200-247, 251-252, 산 1 의 3, 10 호, 산 2 의 29, 30 호, 산 3-산 10, 산 13-산 56
훈 령		<p>◎ 서울특별시 훈령 제 406 호</p> <p>서울특별시 종합청사 건립협의회 규정</p> <p>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합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서울특별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하기 위하여</p>	
<p>서울특별시 종합청사 건립협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 5. 20</p> <p>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p>			

시종합청사 건립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 종합청사 건립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종합청사 건립자금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종합청사 건립건축 차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종합청사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20 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 2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획관리관, 비상계획관, 내무국장, 경찰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건설국장, 주택건설사업소장, 건설부주택도시국장, 시교육위원회

관리국장과 건축학계 및 시정자문위원인 일반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감사) ①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감사는 주택건설사업소 공사 1과장이 된다.

②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 7 조 (실비수당)의부인사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 사고시제 69 호

도로계획시설(학교)및도로
결정및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및도로)변경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및 동법제 13조와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5.14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학교)조서

순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1	구산국민학교	서대문구구산동 산20의1의22필지	12,059㎡	기지정 3,271.6평 추가지정 416평
2	중동국민학교	서대문구성산동 95의1의8필지	10,291㎡	
3	낙골국민학교	관악구신림동 589의1의12필지	9,646㎡	
4	능동국민학교	성동구중곡동 18의24호	1,375㎡	
5	망우국민학교	동대문구망우동 140번지의1필지	13,762㎡	

나. 시설(소로)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차	기장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1	8m	134	구산동산20-1	구산동 127-7	구산 국교	
변경	"	2	1	8	114	"	"		일부변경
기정	"	3	1	6	77	"	구산동 209-5		일부변경
변경	"	3	1	6	76	"	"	폐도	
기정	"	3	2	6	54.5	"	"	폐도	
기정	"	1	1	10	110	성산동 95-1	성산동 134-6	중동 국교	
변경	"	1	1	10	102	" 97-3	"		일부변경
기정	"	3	1	6	130	망우지구 289구획	망우지구 288구획사이	망우 국교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존

◎ 서울특별시고시제 70 호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기간연장허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기간을 다음
과같이 연장허가 하였으므로 이에 고
시한다.

1975. 5.

서울특별시장

- 1. 연장허가년월일 : 75. 5
- 2. 매립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잠실동 지선
- 3. 수면의 종류 : 하 천
- 4. 목 적 : 택지조성 및 하천개수
- 5. 면 적 : 768,349 평
- 6. 연장허가기간 : 75. 6. 20 -
76. 6. 20
- 7. 허가를 받은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동자동 43-18

가. 시설 (학교) 조서

잠실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년

◎ 서울특별시고시제 71 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
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 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5. 20

서울특별시장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명지국민학교	서대문구 남가좌동 산 4 의 2 의 22 필		55,949.3㎡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서대문구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72호

도시계획사업(고등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65호(74.11.2)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관악고등학교 시설의 사업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5. 5. 20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영등포구양평동 2가	23-2	대	1,587.2 평	서울특별시
	24	대	1,559.9 평	
	25	대	801.1 평	
	26-2	대	1,151.6 평	
		도로부지	640 평	
계			5,739.8 평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관악고등학교
 3. 면적 또는 규모 : 18,940㎡
 4.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5.5.15-75.7.30
 6.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7. 공사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악구청에 보관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09 호

환지 계획변경공람공고

1. 당사가 시행중인 영동 제2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
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구획
정리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
획정리 2 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별
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첨부 : 환지 계획변경조서 및 도서(생략)

1975. 5. .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10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대체 지정 공고

당시에서 지정한 수출품 생산지정
업체중 회사명 및 대표자가 변경된
다음 업체를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명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
공고한다.

1975. 5. .

서울특별시 장

다 음

지 정 취 소					대 체 지 정				
지정 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지정 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1205	삼희열 공 사	김외국	성동구풍납동 175	화학사 염 색	1205	협진염지 공업 사	유함수	성동구풍납동 175	화학사 염 색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담십리동	500-1	대	818.8	보문동4가58	라 상 우
"	-5	구	114.6		서울특별시
"	499-46	대	59.2	담십리동 323	박 용 석
"	496-2	"	171	신당동 432-198	이 희 순
"	-7	"	132.7	담십리 322	이 희 은
"	501-1	"	571	" 91-1	엄 재 환
"	500-21	"	32.8	" 505-5	주점옥외113
"	-20	"	32.4	"	"
"	-19	"	32.8	"	"
"	-18	"	33.1	"	"
"	-17	"	33.4	"	"
"	-16	"	33.8	"	"
"	-15	"	32.4	"	"
"	-6	"	8.3	"	"
"	496-8	"	171	중곡동 235-4	신 범 석
"	3	"	149.3	남가좌동 175-180	황 기 십
"	6	"	149.8	"	"
"	4	"	251.5	담십리동 172	박 정 배
"	5	"	204.5	" 192	박 정 호
"	495-1	"	138.1	"	박 정 호
"	2	"	956.4	내수동 70-45	김 욱 두
"	3	"	144.3	"	성 낙 회
"	494-1	"	324.2	담십리동 66-38	조 매 환
"	506-1	"	561.1	" 506-1	이 근 심
"	506-2	"	346.3	여의동 1-45	한 욱 회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담십리동	506-3	대	153.8	서교동 247-88	백정철
"	494-4	"	137.8	담십리 494	박석길
"	494-5	"	101.5	용두동 187-13	최순자
"	494-6	"	101.5	담십리 494-6	정경남
"	-2	"	639.4	담십리 494-2	경봉상사
"	493-1	"	234.2	" 100	김기용
"	-2	"	119.5	" 100	김기용
"	493-3	"	180.6	전농동 530-1	강봉삼
"	493-4	"	198	담십리동 74-1	권영만이도래
"	512-3	"	366.1	삼계동 138-166	김번수
"	-2	"	184.3	마광동 521-5	서성관
"	512-1	"	499.8	신당동 52-164	신익현
"	507-4	"	587.4	번북동 70-38	김규성
"	507-1	"	109.8	담십리동 507-1	박기조
"	507-69	"	109.7	" 507-69	백정선
"	-70	"	262.8	연희동 1-86	김계철
"	506-9	"	128.7	담십리동 129	지영순
"	493-5	"	196	종로구도행동 58-10	김해자
"	-6	"	198	"	김해자
"	492-1	"	407.7	담십리동 357	이삼규
"	-2	"	139.8	" 91-11	엄계용
"	-3	"	432.2	연희동 132-29	권혁
"	513-1	"	180.3	전농동 650-2	정일남
"	492-4	"	804.6	신당동 52-164	신익현
"	513-3	"	167.7	종로체부동 120-14	민영관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답십리동	513-38	대	163.7	종로채부동 120-14	민 영 판
"	517-1	"	215.2	한남동산 10-15	권 중 진
"	517-2	"	331.5	용두동 102-1	김 흥 식
"	513-2	"	687	신당동 52-164	신 익 현

◎ 서울특별시공고제 113호

1975년도 의료유사업자신고실시
 서울특별시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료
 유사업자의 75년도신고물 의료법제 23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실시함을 공고함.

1975. 5. .

서울특별시장

1. 신고의무자: 침사·구사·접골사

2. 신고기간

가. 국내거주자: 75.5.19-75.6.19

(1개월간)

나. 국외거주자: 75.5.19-75.8.19

(3개월간)

3. 신고구분: 수시신고

4. 신고장소 및 방법

가. 신고의무자는 소정의 신고서에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한후 자격

증 원본을 첨부하여 서울특
 별시 보건사회국 외약관에
 본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국외에 이민한 자와 국외

일시 체류자는 국내연교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제
 출하여야 함.

5. 근거법규

가. 의료법 제 23조 제 1항과

동법시행령제 17조제 1항및제 4항

나.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안

마사에 관한 규칙제 17조 :

6. 신고기피자 처리

본 신고의 의무자가 소정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치 않

니할 경우 신고기피자로 간주하

여 의료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함.

○ 서울특별시 공고제 115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
업체지정및자금지원요령중계정요령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
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다.

1975. 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
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1 및 제2유형
에 분류된 품목생산자"를 "제3
유형에 분류된 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제1 및 제2 유형포함) 외
생산자"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 도보제 12 호

철 사 이 건 공 고

서울특별시도봉구 종합철사내외 보
건소청사. 완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속철사로 이전하겠기 공고한다.

다 음

건소계지 : 도봉구수유동 177-17

이전장소 : 도봉구수유동 192-59

이전일시 : 1975. 5.26

1975. 5.19

도봉구보건소장 김 진 의

사 령

○ 1975. 5.10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화공
거사보시보 윤 원 용
지방화공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화공
거사보시보 네 영 현
지방화공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 1975. 5. 12

서부위생처리장 지방전기 이 중 호
기 사 보
지방공무원법제 63 조의 3 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 1975. 5. 15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 한 제
(서기관)
부이사관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에 보함.

○ 1975. 5. 17

산업국양정과 서기관 배 일 영
국가공무원법제 73 조 2 제 1 항
제 2 호와 규정에 의하여 그
지위를 해제함.

○ 1975. 5. 19

성 북 구 지방행정 이 유 성
사무관
용산구보건소민원봉사실장에 보함.
관악구보건소 지방약무 이 삼 북
지원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 월에 처함.

마 포 구 지방건축 이 준 환
지원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 월에 처함.

도 도시 설 과 지방전기 건 병 육
기 사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 월에 처함.

관 악 구 지방전기 윤 은 구
기 사 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채에 처함.

남부병원(약 지방보건 오 영 근
제과장직무대리) 연구관
지방약무기과에 임함.
7 호봉을 급함.

남부병원약제과장에 보함.
위생연구소(서 지방약무 김 서 주
제과장직무대리)기 과
지방보건연구관에 임함.

5 호봉을 급함.
위생연구소식품화학과장에 보함.
위생연구소(서 지방보건 이 민 희
제과장직무대리)기 과

지방보건연구관에 임함.
5 호봉을 급함.
위생연구소세균과장에 보함.

대현산폐수지 지방기계 박 덕 용
사무소소장 기 과
상정과제람제장에 보함.
기 전 과 지방기계 최 명 준
기 사

대현산폐수지사무소소장 직무
대리를 명함.

○ 1975. 5. 20

박 노 진
지방의무기과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영등포구보건소보건지도사장에 보함.

서울특별시